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	--------

발의년월일	2006. 1.
발 의 자	정종기 의원 외

1. 제정이유

-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6.25참전 유공자는 전쟁기간중 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 학도호국단, 소년병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지원대상자는 6.25참전 유공자로서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되, 범법자등 보훈청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3조)
-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1만원, 사망시 사망 위로금 15만원과 기타 군수가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은 매 분기마다 지급토록 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토록 규정함(안 제5조)
- 군수는 매년 1/4분기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하여 개별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6조)
-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익월부터 시행한다.(부칙)

3. 제정(법적)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6호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6.25참전 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25참전 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25전쟁 기간중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6.25전쟁 기간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6.25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6.25참전 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률 제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할 경우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6.25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6.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2. 6.25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거창군내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4. 기타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6.25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분기 익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만,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에 대하여는 첨부생략할 수 있다.

④ 참전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 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호, 제2호에 대하여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익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② 생략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생략

3. 생략

제4條 (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改正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1. 殉國先烈 :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 法律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
2. 愛國志士 :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 法律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愛國志士
3. 戰歿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癢를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신청 이전에 그 傷癢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癢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신청 이전에 그 傷癢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戰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癢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 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癢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傷癢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癢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5. 殉職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癢(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신청 이전에 그 傷癢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公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癢(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癢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癢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7. 武功受勳者 : 武功勳章을 받은 者
- 7의2. 保國受勳者 : 保國勳章을 받은 者
8.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日本國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志願 入隊하여 6·25事變에 參戰하고 除隊된 者(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革命死亡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死亡한

거 창 군 의 회

의 변	안 호	2006 -
--------	--------	--------

수 신 : 거창군의회의장

2006. 01.

.

제 목 : 거창군 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거창군의회의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
거 거창군 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1. 거창군 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1부

2. 찬성의원 서명부 1부 끝.

발의자

(인)

외 인

(요구자 서명 별첨)

